

4.2.18 명예퇴직규정

제정 2014. 04. 28.

개정 2016. 01. 20.

개정 2019. 02. 19.

개정 2023. 08. 0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에게 적용한다.

② 교원은 전임교원을 의미하고, 직원은 일반사무직(기술직 포함), 기능직 및 성과연봉직을 의미한다. 다만 계약직, 임시직, 촉탁직은 제외한다.

제3조(명예퇴직대상)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까지 1년 이상 남았을 때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조기명예퇴직의 특례) ①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조기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다.

② 조기명예퇴직대상은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모든 교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9.02.19., 2023.08.02.>

1. 삭제 <2019.02.19>

2. 삭제 <2019.02.19>

3. 삭제 <2019.02.19>

③ 조기명예퇴직 시기는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9.02.19., 2023.08.02.>

④ 조기명예퇴직 수당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19.02.19>

1. 최초 임용시 호봉제로 임용된 교직원은 호봉을 재적용한다. <신설 2019.02.19>

가. <별표 2>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년 잔여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한다.

나. <별표 2>의 제5호 제1목에도 불구하고, 월봉급액은 봉급표 상의 봉급액 100%로 한다.

2. 최초 임용시 연봉제로 임용된 교직원은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. <신설 2019.02.19>

가. 15년 이상 근속자는 <별표 2>를 적용하되, 정년 잔여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한다.

나. 15년 미만 근속자는 <별표 2>의 제5호 제2목에 의거 월봉급액을 산출한 후, (월봉급액×36×근속개월수/180)을 적용한다.

⑤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조기명예퇴직 수당 이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2.19>

⑥ 조기명예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본조신설 2016.01.20.>

제4조(시기) 명예퇴직 시기는 2월말, 8월말을 기준으로 총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명예퇴직신청)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신청서<별표 1>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명예퇴직대상자 결정) ①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
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

3. 삭제 <2016.01.20.>

4. 그 밖에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
③ 총장은 교직원의 수급계획, 예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명예퇴직대상자 통지)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직원 제출) 명예퇴직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명예퇴직수당지급) ①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은 <별표 2>와 같이 산정한다.

②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기명예퇴직 특례의 유효기간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0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조기명예퇴직 특례의 유효기간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0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하되, 제3조의2 제2항, 제3항은 2023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기명예퇴직의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는 시행일 현재 폐과교원에 한 한다.

② 이 개정규정은 2023년 0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세부이행사항) 폐과교원조기명예퇴직에 대한 절차 및 수당산정은 「2023학년도 폐과교원 재배치·조기명예퇴직

세부지침」에 의한다.

〈별표 2〉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

정년잔여기간별	산정기간
1년 이상 5년 이내	퇴직 당시 (월봉급액의 반액) × (정년잔여월수)
5년 초과 10년 이내	퇴직 당시 (월봉급액의 반액) × $\left(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\right)$

1.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정년잔여월수는 10년으로 한다.
2. 잔여월수의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3.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4.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.
5.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.
 - 가. 호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.
 - 나.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(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의 84퍼센트의 67.5퍼센트를 적용한다.